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합31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이세원

변론 종결2021. 12. 15.

판결 선고202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주식회사 C의 주식 300,000주에 관하여 체결된 2020. 1. 7.자 및 2020. 2. 27.자 각 주식매매변경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9. 3.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한도금액 1,8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 E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 2020. 2. 28., 보증한도금액 1,152,00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2) D은 위 보증서를 F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1,28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2. 29. 원금연체를 이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6. 30. F 주식회사에 대출원리금 합계 1,168,734,3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채무자인 D 및 연대보증인인 B, E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1,064,774,452원(= 일부 회수 후 잔존 대위변제금 1,050,426,071원 + 대지급금 6,262,291원 + 추가보증료 8,086,09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경과

1) B은 2019. 12. 6. 피고와 사이에 B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 300,000주를 9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20억 원은 2019. 12. 20.까지, 2차 중도금 20억 원은 2019. 12. 27.까지 지급하며, 잔금 22억 9,000만 원은 2020. 1. 7.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B과 피고는 2019. 12. 20. 제1, 2차 중도금 각 20억 원을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고 2019. 12. 27.까지 중도금 40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19. 12. 6. 계약금 30억 원을, 중도금으로 2019. 12. 23. 20억 원 및 2019. 12. 24. 20억 원 합계 40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9. 12. 26. 잔금 일부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7억 9,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9. 12. 24.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1,44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받을 주식 매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9. 12.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B과 피고는 2020. 1. 7. 잔금 7억 9,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2020. 2. 2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20. 2. 27. 최종적으로 매매대상 주식수를 300,000주에서 274,486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92억 9,000만 원에서 85억 원으로 변경하며,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모든 계약상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계약 종료 합의를 하였다(이하 '제3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제3차 변경계약은 당초 92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7억 9,000만 원 감액하여 85억 원으로 정한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7억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제3차 변경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0원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0. 1. 7. 및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0. 2. 27. 무렵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D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B이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D은 2020. 2. 29. 원금연체를 이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원고가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계약 중 제2차 변경계약은 잔금 7억 9,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제3차 변경계약은 총매매대금이 92억 9,000만 원에서 85억 원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매매주식수를 300,000주에서 274,486주로 축소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위 각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B의 실질적인 책임재산 감소가 있었다거나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상의 1주당 주식가액[30,966.97원(= 8,500,000,000원/274,486주)]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주당 주식가액[30,966.66원(= 9,290,000,000원/300,000주)]과 거의 동일하므로, 피고가 제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비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3차 변경계약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7억 9,000만 원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총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평균

판사김동석

판사이은경